

# 漁船檢査業務의 改善現況

韓國漁船協會

檢査部長 李 鉉 守

## 1. 序 言

本會가 漁民에 對한 民願業務를 遂行함에 있어는 3가지의 뚜렷한 目標가 있다.

첫째는 關係法令과 이에 따른 各種規定이 定하는 限度內에서 民願人이 願하는바를 充足시켜 주어야 한다는 目標이다.

둘째는 모든 民願人에게 公平正大한 業務處理를 해야 한다는 目標이다.

셋째는 漁船의 技術開發과 性能向上을 도모함으로써 漁船의 海上事故를 未然에 防止하고 漁業生産力의 增強과 水産業의 合理的 發展에 寄與해야 한다는 目標이다.

이러한 目標에 따라 本會에서는 對漁民에 對한 業務의 改善을 위해 不斷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이 中 最近에 改善하여 實施하고 있는 檢査業務에 對하여 紹介하므로써 檢査를 받는 者나 執行하는 者에게 便宜提供이 되고자 한다.

## 2. 民願業務의 支部移讓

1979.1.4. 本會創設 以後 各 支部 檢査業務의 족주와 檢査員의 不足 및 초창기의 檢査業務의 질서확립을 위한 방책 등으로 인하여 一部 本部에서 遂行하고 있던 民願業務를 '80年度에 이르러서는 各支部에 段階別로 移讓推進中에 있다.

推進中에 있는 民願業務 支部移讓 現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支部에 移管하게 되는 民願業務 內容

가. 製造(또는 改造) 檢査에 따른 圖面承認

나. 豫備檢査에 따른 圖面承認

다. 길이 20M 이상 漁船의 積量測定表 作成

라. G/T50噸 이상 漁船의 복원성 判定

마. 길이 24M 이상 運搬船의 만재吃水線 指定 및 건현計算

바. 바라스트 積載에 따른 資料檢討

### 2) 民願業務의 支部移讓 現況

#### 가. 第一段階

지난 '80年 3月 15일부터 4月 1일까지 支部檢査員의 教育을 實施하여 4月 1일부터 製造(또는 改造) 檢査에 따른 圖面承認, 豫備檢査에 따른 圖面承認, 길이 20M 이상 漁船의 積量測定表 作成의 業務를 釜山支部에 移讓하였다.

#### 나. 第二段階

지난 '80年 7月 1일부터 길이 20M 이상 漁船의 積量測定表 作成業務를 仁川 및 麗水支部에 移讓하였다. 7月 1일부터 8月 31일까지 本部檢査員을 該當支部에 派遣하여 支部檢査員의 教育을 實施하고 同 民願業務 遂行에 萬全을 기하도록 하였다.

다. 第三段階(實施計劃) : 釜山, 仁川, 麗水支部에 1,2段階에서 移讓치 못한 全民願業務를 移讓할 計劃이며, 나머지 支部 및 出張所에도 全民願業務를 移讓할 計劃인데 木浦出張所는 麗水支部에서, 忠武 및 三千浦 出張所는 馬山支部에서, 大川支部는 群山支部에서, 濟州 및 注文津支部는 本部에서 支援토록 할 計劃으로 있다. 本會에서는 이 三段階의 支部移讓 計劃도 人員需給問題나 豫算上의 問題가 先決되고, 早急한 移讓에 따른 無理가 생기지 않는 範圍內에서 가능한 한 빠른 期間內에 實施할 豫定으로 되어 있다.

### 3. 豫備檢査業務의 一部改善

'80年 7月 7日자로 本會는 經濟不況인 現時點을 勘案하여 零細漁民의 負擔을 덜고, 迅速한 檢查業務 執行으로 出漁遲延을 最大한 막아 漁民의 所得增大에 寄與코져 檢查業務中 豫備檢查의 一部를 緩和키로 決定하고 緩和指針을 本會 各支部 및 出張所에 示達하였다.

漁船法施行令 第9條 2項 및 同施行規則 第41條에 依한 豫備檢查는 漁船에 使用할 各種 機資材를 生産過程에 따라 材料試驗에서부터 完成品의 性能檢查에 이르기까지 各種 試驗檢查를 行하여 製造業體로 하여금 보다 優秀한 製品을 生産토록 하며, 漁船에 거치한 後의 事故를 未然에 防止코져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本 豫備檢查는 製品을 生産하는 製造業體가 受檢하는 것이 當然하며, 製造業體는 所定의 豫備檢查 過程을 거친 合格品을 出庫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受檢忌避 및 認識不足으로 檢查未畢品을 出庫한 事例가 잦아 檢查未畢品에 對한 檢查를 漁民들이 받게 되므로 해서 出漁遲延과 製造業體가 負擔하여야 할 豫備檢查 手數料를 漁民이 負擔하게 되었고, 完成品에 對한 檢查의 限界性(材料試驗등 破壞檢查는 行할 수 없음)등으로 製品自體의 故障에 따른 事故의 危險性을 排除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本會는 各 製造業體(漁船用 各種 機資材 生産工場)에 受檢을 督促하고 漁民들을 啓蒙하는 한편, 受檢의 意慾增進과 民願의 負擔을 덜기 위해 本 豫備檢查 緩和指針을 마련한 것이다.

緩和의 對象과 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G/T20噸 未滿 漁船에 거치되는 各種 設備(推進器 및 主機關 除外)에 對한 豫備檢查 省略

가. 韓國工業規格品(K·S表示品) 및 他 檢查機關 公認品인 境遇 K·S番號, 檢查機關의 合格證明書, 實體에 附着된 押印의 RUB-UP等을 報告書에 記錄 또는 補完하고 非破壞檢查 및 性能檢查로 한다.

나. 豫備檢查 手數料는 徵收치 않는다.

2) 內然機關 및 推進器의 豫備檢查 완화

가. 本 指針은 30HP未滿 主機關 및 이에 따른 推進器(PROPELLER, PROPELLER軸, 中間軸)

에 適用한다.

나. 承認圖面 및 資料는 本會의 別途 要請이 없는한 다음에 限한다.

① 全體組立圖(主機關) 및 完成圖(推進設備)

② 主要 要目表(主機關에 限한)

③ 豫備品 目錄(主機關에 限한)

④ 主要部 材料仕様 및 強度計算書(共通)

⑤ 工場登錄證 寫本(共通)

다. "나"項의 事項中 CATALOGUE에 明示되어 있는 것은 CATALOGUE로 代身할 수 있다.

라. 部分品 및 機關自體에 附着된 補助部品の 材料檢查는 商工部許可工場 또는 K·S表示品 製作工場의 製品에 對하여 公認된 檢查 및 試驗機關의 材料試驗 成績書만을 提出토록 하여 判定한다.

마. 檢查는 組立完成品의 非破壞檢查 및 性能檢查(陸上試運轉 包含)로 豫備檢查를 實施한다.

바. 手數料는 組立完成品의 檢查手數料(手數料規則의 豫備檢查 手數料 事項中 機關製造檢查 手數料)만을 徵收한다.

3) G/T20噸 以上 G/T50噸 未滿으로 '79年 12月 31日 以前에 發注許可를 得한 漁船의 豫備檢查 對象設備에 對해서는 船舶安全法施行規則 第23條의 定期檢查 受檢項目中 非破壞檢查 및 性能檢查(海上試運轉 包含)로 豫備檢查를 免除한다.

4) 30HP未滿 中古機關의 豫備檢查

가. 豫備檢查를 執行치 않고 機關出處證明만 提出토록 하며, 檢查는 機關 据置狀態에서 點檢과 非破壞檢查 및 性能檢查(海上試運轉 包含)만으로 實施한다.

나. 豫備檢查 手數料는 徵收치 않는다.

5) 豫備檢查를 得하지 않은 30HP 未滿 主機關 및 推進器

가. '80年 8月 31日 以前에 製作 出庫된 機關 및 이에 따른 推進器에 對해서는 30HP未滿 中古機關의 豫備檢查에 準하여 處理한다.

나. '80年 8月 31日 以後 製作出庫分은 必히 本會의 豫備檢查를 받아 出庫되도록 하여 漁民에게 被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4. 造改檢查에 對한 改善

'80年 7月 26日자로 本會는 지금까지 漁船法 第2條 2項에 따른 改造事項이 發生한 漁船은 屯數 및 主機關의 馬力에 區分없이 實施하여 오던 漁船의 改造檢査를 零細漁民의 負擔을 덜기 위해 G/T20屯미만 漁船과 30HP미만 主機關을 거치한 漁船의 改造檢査를 大幅 緩和하고, 또 改造의 狀況에 따라 各各 區分되는 改造檢査를 實施하게 하는 등 綜合的인 指針을 마련하여 本會 各支部 및 出張所에 示達하였다.

本 指針의 目的은 漁船의 改造檢査를 執行함에 있어서 그 適用範圍와 節次 및 業務處理에 關한 事項을 收錄함으로써 公正, 迅速, 正確한 檢査業務를 遂行케 하는데 있으며, 本 指針의 制定에 따라 簡單한 改造時에는 簡便한 受檢을 받게되고 手數料 負擔도 적게 되었다.

改造檢査 指針의 重要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A. G/T20屯 以上 또는 길이 15M 以上の 漁船(主機關外의 改造일 境遇; 改造後의 總屯數 또는 길이 基準) 및 30HP 以上の 主機關을 据置한 漁船(主機關의 改造일 境遇; 改造後의 主機關 出力基準)의 改造檢査

#### 1) 改造檢査의 範圍

漁船法 第2條 2項, 同施行令 第10條 및 第11條에 依據 改造檢査의 範圍는 下記와 같다.

(1) 船舶의 主要치수(船舶의 길이, 너비, 깊이)를 變更하는 것.

(2) 船舶의 用途 또는 漁業의 種類를 變更할 目的으로 船舶의 構造나 設備을 變更하는 것.

가. 上記“(1)”의 船體의 主要한 構造의 變更으로 船體의 強度, 水密性 또는 防火性에 影響을 주게 되는 것.

나. 舵 또는 操舵裝置에 對한 變更으로 船舶의 操縱性에 影響을 주게 되는 것.

다. 主要한 補助機關을 새로이 設備하거나 主要한 補助機關의 種類 또는 出力을 變更하는 것.

라. 重要補機와 그 SYSTEM을 새로이 設備하거나 重要補機의 出力變更으로 그 SYSTEM의 變更을 要하는 것.

(3) 推進機關을 새로이 設備하거나 機關의 種類 또는 出力을 變更하는 것.

(4) 上記“(1),(2),(3)”에 揭記한 것 以外에 漁船法 第3條의 各號에 該當하는 固定된 施設로서 既存狀態에 對한 新設, 追加, 位置變更 및 性能과 型式의 變更 등으로 船舶의 勘航性 또는 人命의 安全保持에 影響을 주게 되는 것.

※ 단, 漁船法 施行以前('79年 1月 1日)에 進水한 既 登錄된 漁船으로서 檢査證書와 相異한 總屯數, 機關種類 및 出力으로 運航하던 漁船이 市·郡에서 實際의 總屯數, 現 据置機關의 種類 및 出力으로 變更登錄할 境遇에는 本會에서도 改造檢査를 省略하고 變更登錄된 登錄原簿謄本을 提出받아 臨時檢査를 實施하고 檢査證書改書만으로 處理한다.

#### 2) 圖面의 提出

##### (1) 圖面提出의 範圍

가. G/T50屯 以上 漁船의 改造時; 改造仕様書, 改造部 基本圖 및 改造部 構造圖(必要時에는 細部詳細圖 包含)

나. G/T50屯 未滿 G/T20屯(또는 길이 15M) 以上 漁船의 改造時; 改造仕様書 및 改造部 基本圖(단, 이 境遇는 圖面承認없이 管割支部에만 提出하면 된다)

다. G/T20屯 未滿 漁船으로서 30HP 以上 推進機關의 改造時; 改造仕様書(但, 이 境遇는 圖面承認 없이 管割支部에만 提出하면 된다)

##### (2) 圖面의 種類

가. 船舶의 主要치수(船舶의 길이, 너비, 깊이) 變更으로 因한 改造의 境遇;

① 改造仕様書 및 基本圖 6種(G/A, M/S, C/P, Lines, Hyd./C, E.R/A)

② 改造部의 構造圖

나. 船舶의 用途 또는 漁業의 種類를 變更할 目的으로 船舶의 構造나 設備을 變更하는 것.

가) 船舶의 길이, 너비, 깊이는 變更치 않고 漁倉, 機關室, 甲板室等 船體의 主要한 構造가 變更될 경우;

① 改造仕様書

② 一般配置圖

- ③ 中央橫斷面圖
- ④ 鋼材配置圖
- ⑤ 機關室 全體裝置圖(機關室의 變更이 없을 境遇는 除外)
- ⑥ 改造部의 構造圖
- 나) 舵 또는 操舵裝置에 對한 變更으로 船舶의 操縱性에 影響을 주게 될 境遇;
  - ① 改造仕様書(操舵設備 變更에 對한 事項 包含)
  - ② 舵構造圖
  - ③ 船尾骨材圖(船尾骨材에 變更이 없을 境遇는 除外)
- 다) 主要한 補助機關을 새로이 設備하거나 主要한 補助機關의 種類 또는 出力을 變更하는 改造의 各 境遇
  - (가) 發電機를 驅動하는 補助機關의 變更 및 代替로 因하여 機關臺만 變更될 때;
    - ① 改造仕様書
    - ② 엔진거더어 圖面
  - (나) 發電機를 驅動하는 補助機關의 容量 變更 및 代替로 因하여 機關臺 및 配管의 寸數變更이 要求될 때; 上記 “(가)”의 提出圖面과
    - ① 配管係統圖(當該機關에 關係있는 配管係統에 限함)
  - (다) 發電機를 驅動하는 補助機關의 變更 및 代替로 因하여 上記 “(가)(나)”의 變更과 發電機의 容量變更이 있고, 이에 따라 電氣機器 및 配線等의 變更이 要求될 때; 上記 “(가)(나)”의 提出圖面과
    - ① 電氣機器 配置圖
    - ② 電氣配線 係統圖
  - (라) 推進에 關係있는 補機를 驅動하는 補助機關의 容量變更으로 그 SYSTEM의 變更을 要할 때(但, 이 境遇는 圖面承認없이 管割支部에만 提出하면 된다)
    - ① 改造仕様書
    - ② 改造되는 補助機關의 SYSTEM 係統圖
- 라) 重要補機와 그 SYSTEM을 새로이 設備하거나 重要補機의 出力變更으로 그

SYSTEM의 變更을 要하는 境遇(但, 이 境遇도 圖面承認없이 管割支部에만 提出하면 된다)

- ① 改造仕様書
- ② 改造되는 補機의 SYSTEM 係統圖
- 다) 上記 “(가), (나), (다), (라)”의 船體의 構造나 機關設備의 變更이 없이 簡單한 漁撈設備만 變更되는 境遇(但, 이 境遇도 圖面承認없이 管割支部에만 提出하면 된다)
  - ① 改造仕様書

다. 推進機關을 새로이 設備하거나 機關의 種類 또는 出力을 變更하는 改造의 各 境遇

가) 推進機關의 變更 및 代替가 있으나 機關本體外에 其他 部分의 變更이 전혀 없는 境遇; 圖面承認없이 現場에서의 撤底한 檢査만으로 處理한다.

나) 推進機關의 種類變更 및 代替가 있으나 軸系 및 其他部分의 寸數變更이 없는 新換만 있을 境遇; 圖面承認없이 現場에서의 撤底한 檢査로 處理하며, 新換部分(軸系 및 其他部分)에 對해서는 修理檢査事項으로 處理한다.

다) 推進機關의 變更 및 代替로 因하여 中間軸의 길이 및 機關臺만 變更될 때;

- ① 改造仕様書
- ② 機關室 底部(船底) 構造圖

라) 推進機關의 變更 및 代替로 因하여 機關臺, 中間軸, 推進軸, 스팀츄브 및 프로펠러의 寸數變更이 要求될 때; 上記 “(다)”의 提出圖面과

- ① 一般配置圖
- ② 機關室 全體裝置圖
- ③ 軸系裝置圖
- ④ 船尾骨材圖(스팀츄브 및 스팀보스의 寸數變更이 없는 境遇는 除外)

마) 推進機關의 變更 및 代替로 因하여 上記 “(라)”의 變更과 推進에 關係있는 補機의 台數 및 容量, 配管系統의 追加 또는 寸數의 變更을 要할 때; 上記 “(다), (라)”의 提出圖面과

- ① 機關室 配管圖(推進機關에 關係 있는 各 配管系統에 限한다. 다만, 配管系統

의追加 및 치수變更이 없이 그位置만變更될 境遇는 除外한다)

라. 上記 “가, 나, 다”에 揭記한 것 以外에 漁船法 第3條 各號에 該當하는 固定된 施設로서 既存狀態에 對한 新設, 追加, 位置變更 및 性能과 型式의 變更等으로 船舶의 勘航性 또는 人命의 安全保持에 影響을 미칠 偶慮가 있는 境遇(但, 이 境遇도 圖面承認없이 管割支部에 提出하면 된다);

#### ① 改造仕樣書

② 改造部에 따라 檢査에 特히 必要한 圖面  
라. 上記의 各 境遇가 混合하여 圖面提出의 種類를 決定하기 困難한 改造의 境遇가 發生할 時는 本部의 指示를 받아서 決定한다.

바. 上記 各 境遇에 따른 提出圖面外에도 強度의 計算이 必要한 部位는 強度計算書 或은 強度計算에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사. 改造의 各 境遇에 따라 圖面提出의 種類를 決定할 때에는 圖面提出前에 미리 擔當檢査員이 現場立會 또는 申請者로부터 改造事項을 把握하여, 圖面に 依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면 圖面承認 節次를 省略하고 現場에서의 徹底한 檢査執行단으로 處理할 수 있으며, 圖面の 提出이 必要할 시는 미리 申請者에게 上記의 各 境遇에 따른 圖面提出의 種類를 指示토록 한다.

아. 本 改造檢査圖面은 豫備檢査의 提出圖面과는 別個이므로 混同치 말 것이며 豫備檢査 提出圖面은 本會 漁船檢査指針 第11章의 豫備檢査 및 中古機關豫備檢査 指針에 依한다.

#### (3) 圖面作成時의 注意點

가. 改造仕樣書; 改造의 目的과 改造部分 및 改造되지 않는 部分을 明確히 하고, 漁船屯數의 增加, 機關出力의 增加, 船體의 延長, 漁業의 種類 및 從業制限의 變更을 隨伴하는 改造는 設備의 變更을 要할 境遇가 있으므로 改造되지 않는 部位라 할지라도 漁船의 各 設備(船體, 機關, 救命, 消火, 航海用具 및 法定備品等)에 對해 必히 明記토록 한다.

나. 改造部 基本圖; 變更되는 部分의 寸法 및 位置가 表示되어 있을 것.

다. 改造部 構造圖; 變更되는 構造部分만 圖示하면 되나 可能한限 關聯部分을 함께 圖示하고 變更部分을 表示토록 할 것.

#### 3) 檢査執行 節次

##### (1) 圖面承認

가. 本 指針 “1)”의 改造檢査의 範圍에 該當하는 改造事由가 發生한 漁船은 “2)”의 承認이 必要한 圖面 各 3部를 管割支部 經由 本部에 提出하여 承認을 得하여야 한다. (但, 本會 委任專決規定에 依據 圖面承認權을 委任받은 支部는 支部에서 承認한다) 이때 圖面承認 申請人은 原則으로 造船工業振興法에 依한 商工部登錄業體로 하며, 그 業體의 商工部 登錄證 寫本(原本對照 畢한) 1部를 添附토록 한다.

나. 改造事項中 漁船法 第2條 2項에 該當하는 改造事由가 發生한 漁船은 漁船法 第5條에 依한 改造發注許可 및 造船工業振興法에 適用을 받는 漁船은 改造承認을 得하고 原本對照 畢한 許可書 및 承認書 寫本 各 1部를 圖面承認 申請時에 添附하여야 한다. (但, 改造發注許可書를 申請과 同時에 提出하면 改造承認書는 改造工事 完了前까지 提出하여도 無妨하다).

다. 承認된 圖面に 朱書된 要求, 勸告等에 對해서 管割支部長은 遲滯없이 造船所 및 造機業體와 協議하여 解決하고, 未解決分은 本部에 連絡하여 指示를 받도록 한다.

라. 圖面提出 時期는 工事着手前 充分한 期間을 두고 提出함을 原則으로 하나 不得已한 事情으로 提出이 늦어져 工事に 支障을 招來할 境遇가 있을 시는 管割支部는 緊急을 要하는 部分에 對하여 事前檢査를 執行하고 問題點에 對해 本部의 指示를 받는 等의 方法을 講究하여 工事に 支障이 없도록 한다.

마. 이미 承認된 圖面の 一部分을 變更코져 할 때에는 그 部分의 改正圖面 3部를 本會에 提出하여 再承認을 받도록 한다. 萬一 承認事項과 船舶의 길이, 너비 및 깊이가 5% 以上 相異하거나 總屯數가 承認事項과 10%

以上 相異할 時 또는 主機關의 種類가 承認 機關의 種類와 相異하거나 同一種類의 機關 일지라도 그 出力이 承認事項과 20% 以上 相異할 時는 變更承認을 得하고 變更承認書 寫本 1部와 改正圖面 3部를 本會에 提出하 여야 한다.

바. 承認없이 管割支部에만 提出하는 圖面은 各 1部씩으로 하며, 圖面上의 漁船設備規則 에 適合하지 않은 部分은 擔當檢查員의 指示에 따라야 한다.

## (2) 檢查申請

가. 改造檢查 申請人은 本會 管割支部에 漁船 法施行規則 第32號 書式에 依한 漁船檢查 申請書에 漁船法施行規則 第43條 1項 2號에 依한 書類(但, 圖面을 既 承認받은 境遇는 申請書 下端 添附書類中 圖面欄에 承認받은 本會公文의 番號 및 日字를 朱記하여 擔當 檢查員의 確認捺印을 받아 添附省略한다)를 添附하여 檢查申請을 한다.

나. 이때의 檢查申請은 漁船法 第16條 4項 및 同施行規則 第38條 1項 2號 가目の 規定에 依據 臨時檢查로 하며, 萬一 定期檢查, 中間 檢查 및 他臨時檢查와 重複될 境遇에는 當 該 定期, 中間 및 他 臨時檢查에 改造檢查 를 包含하여 申請하고 申請書의 備考欄에 <改造檢查 包含>이라 明示한다.

## (3) 檢查執行

가. 改造檢查時에 新換 또는 代替되는 모든 機資材는 本會 漁船檢查指針 第11章, 豫備 檢查 및 中古機關 豫備檢查指針에 依한 所 定の 豫備檢查를 得한 合格品인가를 確認 (豫備檢查 合格證明書와 펀칭部位 對照)하 여야 한다.

나. 改造檢查에 있어서 改造部分에 對해서는 製造檢查에 準하여 檢查 實施한다.

다. 改造에 關聯된 部分의 諸 設備는 現 漁船 設備規則에 適合토록 하여야 하나 直接 改 造되지 않은 關聯部位로서 支障이 없다고 認定되거나 現 設備規則에 適用하기 困難한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改造部分에 舊附材를 使用할 境遇는 使用 附材에 對하여 据置 및 取付前에 充分한 調

査를 行하여 再使用 可能如否를 判斷한다.

마. 船體의 主要寸法 變更의 改造時에는 改造 部의 外板, 甲板의 이음매에 對하여 赤外 X線에 依한 非破壞檢查를 行한다.

바. 主機裝置를 바꿀 때에는 다음 事項에 留 意한다.

① 主機거어더는 原則적으로 船底까지 達하 게 한다.

② 主機거어더는 充分히 前後로 延長한다.

③ 主機거어더는 垂直하게 한다.

④ 軸系中心線의 變更으로 보스부의 內部에 育成材 보강링을 할 때에는 事前에 그 溶 接 및 施工方法에 對하여 檢討하여야 한 다.

사. 改造工事が 完了되면 諸 改造設備에 對하 여 製造檢查에 準한 該嘗試運轉을 行한다.

아. 改造에 依하여 漁船의 屯數, 復原力 및 滿 載吃水線에 影響을 미칠 境遇는 別途로 積 量測定, 復原性檢查 및 滿載吃水線檢查를 받 아야 한다. (但, 復原性 및 滿載吃水線檢查 適用除外 漁船은 例外)

## 4) 手數料의 適用

(1) 漁船法 第2條 2項에 該當하는 事項으로 改造發注許可(改造承認 對象은 改造承認)을 得하고 本會의 改造檢查를 받는 漁船은 手 數料規則中 改造檢查 手數料를 適用한다.

(2) 改造檢查의 手數料는 定期, 中間 또는 타 臨時檢查와 重複된 때에는 定期, 中間 또는 他 臨時檢查手數料(臨檢回數計算)에 該當 改造檢查 手數料(圖面審査料 包含)를 加算 한 金額을 徵收하고, 改造단을 爲하여 臨時 檢查로 指定한 때에는 該當 改造檢查 手數 料(圖面審査料 包含)만을 徵收한다.

(3) 漁船法 第2條 2項에 該當되는 改造라 할 지라도 船體의 構造나 機關設備의 變更이 없이 漁業의 種類를 變更할 目的으로 簡單 한 漁撈設備만 變更하는 改造는 修理檢查 事項으로 處理하며, 手數料도 修理檢查 手 數料를 適用한다.

(4) 漁船法 第2條 2項에 該當되지 않은 改造 檢查時에는 改造檢查 手數料를 適用하지 않 고 當該檢查(定期, 中間 또는 臨時檢查) 手

數料에 修理檢査 手數料(圖面承認이 必要할 때는 圖面審査料 包含)를 加算한 金額을 徵收한다.

(5) 改造檢査와 原狀態를 變化시키지 않고 原狀復歸하는 修理檢査가 重復된 境遇에는 改造檢査 手數料(圖面審査料 包含)와 修理檢査 手數料(圖面審査料 包含)中 많은 쪽의 金額만을 徵收한다.

(6) 上記의 各 境遇外에 手數料를 適用하기 困難한 境遇가 發生할 때는 本部의 指示를 받아 決定토록 한다.

B. G/T20噸 未滿 또는 길이 15M 未滿의 漁船(主機關外의 改造일 境遇; 改造後의 總噸數 또는 길이基準) 및 30HP 未滿의 主機關을 据置한 漁船(主機關의 改造일 境遇; 改造後의 主機關 出力基準)의 改造檢査

- 1) 改造檢査의 範圍; “A의 1)”과 同一함.
- 2) 圖面의 提出; 圖面은 提出치 않고, 現場에서 의 徹底한 檢査만으로 處理한다.
- 3) 檢査執行 및 節次

(1) 檢査申請

가. 改造檢査 申請人은 本會 管制支部에 漁船 法施行規則 第32號 書式에 依한 漁船檢査 申請書에 漁船法施行規則 第43條 1項 2號에 依한 書類(但, 圖面은 省略)를 添附하여 檢査申請을 한다. 이때, 漁船法 第2條 2項에 該當하는 改造事由가 發生한 漁船은 改造發 注許可書 寫本(原本對照 畢한) 1部를 添附 토록 한다.

나. 이 때의 檢査申請은 漁船法 第16條 4項 및 同施行規則 第38條 1項 2號 가目的 規程에 依據 臨時檢査로 하며, 萬一 定期檢査 또는 他 臨時檢査와 重復된 境遇에는 當該 定期 또는 他臨時檢査에 改造檢査를 包含하여 申請하고 申請書의 備考欄에 <改造檢査 包含>이라 明示토록 한다.

(2) 檢査執行; “A의 3) - (3)”과 同一함. 但, 豫備檢査 合格品은 主機關 및 推進機(軸系 包含)만 該當됨.

4) 手數料의 適用; G/T20噸 未滿(또는 길이 15M未滿)의 漁船 및 30HP 未滿의 主機關을

据置한 漁船의 改造時에는 改造檢査 手數料를 適用치 않고 當該檢査 手數料(定期檢査 또는 臨檢回數를 計算한 臨時檢査 手數料)만을 適用한다.

※ 用語의 說明; 本 改造檢査指針에서 의 用語의 說明은 다음에 依한다.

- 改造; 既存狀態를 變化시킬 目的으로 構造, 種類 및 出力을 變更시키는 것.
- 修理; 既存狀態를 變化시키지 않고 新換 또는 整備만 하는 것.
- 主要한 補助機關; 發電機(非常 電源用에 使用하는 것은 除外)를 驅動하는 補助機關과 船舶의 推進에 關係있는 補機를 驅動하는 補助機關을 말한다.
- 重要補機; 發電機(非常電源用에 使用하는 것은 除外)와 船舶의 推進에 關係있는 補機이며, 漁獲物 保存을 爲한 冷凍裝置를 包含한다.

## 5. 結 言

序言에서 言及한 바 있는 本會의 民願業務 遂行에 있어서의 3가지 目標을 同時에 達成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느 한가지에 重點을 두게되면 다른 두가지에 缺陷이 생기게 되는 難點이 있다. 따라서 目標의 早期達成을 위해서는 本會와 造機業體 및 漁民이 相互 信賴하고 協力하는 氣風이 切實하게 必要하다.

今般 本會의 이러한 檢査業務의 改善에 있어서도 法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零細漁民의 負擔을 덜게 하고, 可能한 檢査의 節次를 줄여 受檢者로 하여금 보다 簡便한 檢査를 받도록 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지 檢査 그 自體가 없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도리어 受檢者側은 本會의 趣旨를 十分 認識하여 緩和된 檢査에 있어서는 보다 自體의 點檢을 철저히 하여 豫想되는 海上事故를 未然에 防止함은 물론 本會의 民願業務 遂行目標의 早期達成에 積極 協力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自己의 資産과 製品을 保護하는 일이고, 相互 信賴할 수 있는 社會淨化運動에 앞장서는 길이며, 내일의 水産立國에 拍車를 加하는 지름길이 아닌가한다.